

내년부터 석면제품 사용금지

석면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의 금지를 시작으로 '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되는 건축자재용은 지붕·천장·벽 및 바닥 재용 석면시멘트 제품으로 석면슬레이트, 석면칸막이(밤라이트) 등이 대상이다. 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은 '08. 1. 1.부터 금지된다. 또한, 자동차

용 브레이크라이닝(패드), 클러치라이닝(페이싱) 등도 사용 등이 금지된다. 다만, 금지일 현재 유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 제공 및 사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금지된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부, 화학물질(88종)의 노출기준 개정을 추진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부는 7월20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노·사, 관련기관 및 대학 관계자 등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한 환경 평가 기준이자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망간 등 화학물질(88종)의 노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안은 물질별 독성, 동물 또는 인체 유해성 등 그 동안 축적된 새로운 유해·위험 정보와 선진국의 노출기준 수준, 국내 취급 근로자의 노출실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의 개정 추진을 위해 '05년도부터 화학물질(126종)을 선정하여 노출기준 개정방안 연구용역(40억)을 수행해 왔으며, 연구를 완료한 톨루엔 등 88종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중 관련 고시를 개정, '07년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50인 미만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7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안전관리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2,500여개소 대상)

노동부는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해 '06. 7. 18 ~ 8. 25(6주)까지 2,500여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06. 4월말 전년 동기대비 전체 재해자수가 2,661명이 증가하였고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611명(98.1%) 발생하여 재해자수 증가의 주요인이 되어 재해증가 추세를 조기 차

단하여 안전·보건 취약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히 재해율이 높은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대상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